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조

제목 환경부 「재활용 방치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알림(긴급)



1.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에 참여해주신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간 소각·매립업계의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참여 의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물론 국회와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재활용 방치폐기물 소각·매립 처분에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기 안내해드린 내용이 포함된 지침이 불임과 같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내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매립장 상부에 동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과 향후 처리하는 모든 재활용 방치폐기물(필리핀 회수 폐기물 포함)의 소각잔재물에 대해서 매립부담금을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붙임 :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처리를 위한 협조 요청 1부. 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담당자	오은석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박무중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9 - 456호		(2019. 11. 21)		접수				
우편번호	045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비공개



환경부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폐기물 안정적 ·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 요청

1. 우리부에서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19.2.21.) 및 불법폐기물 연내 처리 대통령 지시 ('19.4.29.)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지연 등에 따른 소각용량 부족으로 불법폐기물(120.3만톤)의 연내 전량 처리목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시 · 도에서는 불임의 지침에 따라,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의 임시보관장 승인 ②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가목의 불연물 재위탁(처분 용량 10%범위 내) 등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불임: 불법폐기물 안정적 ·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시설사무관 이상수 행정사무관 한경동 과장 권병철
전결 2019. 11. 19.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739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64 팩스번호 044-201-7394 / lionhairz@me.go.kr / 비공개(5)

**불법폐기물 안정적 · 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2019.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1

추진배경

- '19.2월기준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방치·불법투기 등) 약 120만 톤 이 적체되어 2차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국민 생활 및 안전에 우려 ○ 당초 처리계획(2.21 대책)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대통령지시사항, 4.29)
 - ⇒ 이에, 사회적재난 상황*인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법령 적용을 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
- * 화재발생,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국민안전우려 및 국제적인 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 위신 하락 우려

2

추진경과 및 관계법령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19.2.21)
 - ☞ 불법폐기물은 신속하고 안정적 처리를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해 법령상 적극행정 이행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폐기물 보관량·기간 초과 승인) 및 제32조 [별표8] 제3호(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3

기본 방향

- ① 불법폐기물은 신속히 “폐기물중간(소각) 처분업체로 반입”
- ② 폐기물소각업체는 불법폐기물 반입량 증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사업장내 여유 부지를 활용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 등 설치·운영
 - *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보관을 위한 “폐기물 임시 보관장” 승인
- ③ 폐기물소각업체는 불법폐기물 소각처분하기 위한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대상 불연물을 매립업체로 재위탁 가능
 - ☞ 불연물 재위탁량은 허가받은 소각처분용량의 10% 이내
 - * 지자체는 소각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 중 분리과정에서 발생된 폐토사 등 매립대상 “불연물에 한해 재위탁” 승인

4

불법폐기물 배출·처분 방안

1.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 승인

⇒ “폐기물중간(소각)처분업체”가 불법폐기물을 처분할 경우 동 사업장 내 “폐기물 임시 보관장” 및 보관기간 연장 승인

【해당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대상업체) 불법폐기물 처리에 참여하는 폐기물중간(소각)처분업체
 - 다만, 불가피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도 가능
- (임시 보관장) 불법폐기물 소각처분을 위해 반입한 경우 “임시 보관장” 및 “보관기간” 연장 승인
- (설치지역) “폐기물중간처분업체” 사업장 내 여유부지
- (허용 보관량) 폐기물 최대 소각 처분량을 감안하여 보관과정에서 붕괴, 유출 등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
- (승인기간) 폐기물 반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소각업체 신청에 의해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임시 보관장 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

- ◇ 임시 보관장 주변은 외부인 출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간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됨
- ◇ 임시 보관장소 바닥은 침출수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천막 등을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됨
 - 임시 보관장 발생 침출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에 유입·처리
- ◇ 임시 보관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인화성물질 보관·저장장소와 안전거리 확보된 장소
- ☞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대상에서 제외

2.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불연물 재위탁 가능

⇒ “폐기물소각처분업체”는 불법폐기물 분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등 매립대상 불연물을 매립 업체로 재위탁 가능

【해당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5] 제3호

- (대상업체) 불법폐기물 처리에 참여하는 폐기물중간(소각)처분업체
- (승인대상)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에서 소각처분을 위해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립대상 불연물에 한함
 - *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발생되는 매립대상 불연물
- (재위탁 승인량) 소각업체가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0% 범위 내
- (승인기간) 폐기물 반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소각업체 신청에 의해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불연물 재위탁 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

- ◇ 불연물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매립업체로 재위탁하고, 그 양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됨
 - 동 지침 종료 후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 통해 불연물 재위탁 신고 내용 제외하여야 됨
- ◇ 지정폐기물에 오염된 폐기물은 불연물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

5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는 관내 불법폐기물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분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임시 보관장 및 불연물 재위탁 승인 협조
- 폐기물소각처분 업체에서 불법 폐기물 처분을 위한 폐기물 임시 보관장 및 불연물 재위탁 승인 신청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에서 제3의 장소로 운반, 보관하거나, 장기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임시 보관장” 승인조건 부여 및 지도·점검 실시
- 폐기물소각처분 업체는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한 임시 보관장 설치 등으로 인해 주변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폐기물 임시 보관장 설치에 따른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불법폐기물 보관과정에서 침출수 유·누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
- 폐기물소각업체는 불법폐기물 위(수)탁 계약 물량이 금년 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 설치(연장)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_____)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소각시설) 소재지	
⑨ 임시 보관장 소재지	

⑩ 임시 보관량 설치 승인 신청내용

⑪ 임시 보관장 규모		⑫ 불법폐기물 반입 계획량
		(톤)
⑬ 임시 보관장 설치 형태	바닥 재질	울타리 구조
⑭ 불법 폐기물 임시 보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임시 보관장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불연물 재위탁(연장)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업 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소각시설) 소재지		소각시설 허가용량	톤/일
⑨ 불법 폐기물 반입현황	반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반입량	톤	
⑩ 불연물 재위탁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위탁 폐기물	재위탁 예상량 (톤)	수 탁 업 체	
		업체명	영업대상 폐기물
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불연물 재위탁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재활용품)]